

Vol. 6

2024.06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25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윤지현전임 jhyun@hjcustoms.co.kr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입안 예고
- III. 조세심판사례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고세율 농림축산물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 시 사용신고 절차를 명확화하고, 관세환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신청인은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를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해야 함을 명확화 * 고시 [별표 3]의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 초과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등 ○ 환급신청인이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로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경우, 사용 입증책임이 환급신청인에게 있음을 명확화 ○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시 제출서류 명확화
기타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 2 및 고세율원재료 품목의 고시 적용 순서 명확화 ○ 2025 HSK 개정사항을 별표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 [별표 2], [별표 3] - HSK 3824.99-9053 호(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등 14개 품목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3) 시행일

25.05.13

I. 법령 개정사항

2.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미국 관세조치 등 불확실한 여건을 반영하여 철강업계 수출지원을 위해 벌크선에 적재·수출되는 철강제 관류를 선상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하고, 적재화물이 없는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의무를 완화하며, 수출신고 빈번 오류 항목을 자율정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선상수출신고 대상품목 확대	국내에서 제조하여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철강제 관류에 대해 체선료 절감, 적재기간 단축 등 지원을 위한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 ※ (기존) 산물·광산물, 신선도 유지 수산물, Ro-Ro 선 적재 신폼차량, HS 제 72 류 철강류 (개정) HS 제 7304 호 ~ 제 7306 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류 등 추가
적재화물이 없는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생략 확대	(기존) 적재화물이 없는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적재화물 제출 생략은 '수리목적 또는 신조한 경우'로 제한 (개정) 적재화물이 없는 모든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생략 ※ 출항보고서 등으로 적재화물목록 제출 같음
수출신고 빈번오류 항목을 자율정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리 강화	물품소재지와 소재지 기본주소 항목은 자율 정정 대상에서 제외 ※ 세관별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물품소재지 변경은 신고 취하 또는 각하 필요
조문 순서에 따른 [별표] 및 [별지] 순서 정비	[별표] 및 [별지]의 번호를 조문 순서에 따라 변경

<p>기타 개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결과에 따른 직권정정에 대한 근거 조문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 13 조(계약상이수출신고서의 처리) - (개정) 제 14 조(분석의뢰) ○ 선상수출신고 전 수출물품 적재를 위해 제출하는 '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신청)서' 서식 문구를 명확하게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 → 수출신고전 적재허가 - 기한 기재란 변경: 유효기간 → 적재완료기한 ○ 같은 조문 내 인용 조항을 나타내는 중복 문구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고려한 조문 정비
-----------------	--

(3) 시행일

'25.05.29

I. 법령 개정사항

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돼지고기, 계란가공품 등 7개 물품에 대해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7개 물품에 할당관세 부과	[별표 13]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신설 - 돼지고기, 계란가공품 등 7개 품목

(3) 시행일

'25.05.01

I. 법령 개정사항

4.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시 개업신고 절차 신설 및 제품출납상황표 간소화를 통해 블렌딩 수출을 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 지침」을 고시 규정으로 상향·신설하여 전자상거래 국제물류 유치를 지원하며, 수량 단위 외 중량 단위 재고관리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신고를 허용하여 물류 산업 유치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시 개별소비세법 등에 따른 신고 절차 등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개업신고를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제품출납상황표 서식을 간소화하고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 기준 및 물품관리 절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C 운영인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 ○ 물품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신고 후 품목단위로 반출입신고 및 재고관리, 수출금액의 10% 이내에서 국내 사업자가 수입통관 가능,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자체 재고조사 후 결과보고 등 ○ 주문 취소된 특송·우편물의 반입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취소된 특송·우편물과 해외 배송 후 반품 물품은 보세운송 신고하여 반입
B/L 분할·합병 시 서류제출 생략 기준 신설 및 사용신고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 분할·합병 시 화물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수량 단위 외 중량 단위 재고관리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신고 허용

용어 및 조문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력 → 자금능력, -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언어순화에 따른 용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회자 → 참관인
---------------	---

(3) 시행일

'25.05.12

I. 법령 개정사항

5.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의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14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프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덤프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부과대상 물품, 부과대상 공급자, 덤프방지관세율 규정	본문 및 별표를 통하여 규정 - [별표 1] 덤프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 [별표 2]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 - [별표 3]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프방지관세율

(3) 시행일

'25.05.16

II. 입안예고

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1) 입안 이유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에 따라 일괄제출 제도 등 절차를 마련하고, 가격신고서 서식을 개정하며, 잠정가격신고 관련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p>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편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최초 수입신고건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수입 거래 형태별로, 가격 정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기업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준비와 신고 대리인의 과세가격결정자료 검토로 인한 통관 지체 우려를 고려 사후 제출 허용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8 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격신고서와 함께 미제출 사유서 제출 허용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기업(AEO, ACVA)과 전년도 납부 세액 5 억원 미만 수입기업에 대해 가격신고는 하지만 과세가격결정자료는 제출 생략 ○ 미제출 기업 관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기업 등에 대해 수입통관 후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청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세조사 등 조치
<p>가격신고서 서식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판단 필요 문항을 객관적 사실 확인 문항으로 개선 ○ 특수관계자간 수입가격 결정방법 작성 문항 신설 ○ 동일·반복 수입신고건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

<p>잠정가격신고 업무처리 규정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정가격신고 수리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 심사가 아닌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업무 규정 ○ 잠정가격신고 사유, 가격확정예정시기에 대해 세관장이 경미한 실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확정가격신고 이전까지 정정하도록 개선
<p>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 확대</p>	<p>특수관계 영향 여부 판단 등 심사 초기 단계에서 실무회의를 추가 개최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심사 방향 사전 협의하여 심사 효율성 제고</p>

II. 입안예고

2.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개편

(1) 입안 이유

현행 통합 ①법규준수도, ②특송업체 법규준수도, ③법규수행능력평가 등 유사 제도를 병행 운영함에 따라 행정 비효율과 제도별 평가항목 차이로 인한 민원 혼란 및 신뢰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외신뢰 확보 및 업체 자율법규준수 제고를 위해 법규준수 평가제도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평가기준 공개 범위 확대	(현행) 법규준수도 평가기준은 신고정확도 평가항목(정정항목)에 한해 제한적 공개 (개정) 최소기준, 신고정확도·중요사항위반·관세협력도 평가항목 및 정의서 등 공개 ※ [별표 1] 공급망별 평가대상 최소기준 [별표 2] 신고정확도·중요사항위반·관세협력도 평가항목 및 정의서 (25.12 시행)
‘수출입 오류점수제도’와 평가기준 일치화	(현행) ①중요·경미 정정항목으로 구분, ②정정 사유에 따른 면제 (개정) ①오류점수제도 상 중요·경미 정정 항목 정의와 일치화, ②오류점수제도 상 정정 시기 및 사유에 따른 면제기준과 일치화 ※ 오류점수와 달리 법규준수도는 귀책에 관계없이 모두 감점 (현행 유지)
관세협력도 확대 (가점 확대)	(현행) 표창 외 가점 항목 부족, 가점 5점 배점, 표창 등록 시 세관의 수기 입력 (개정) 간담회·설명회, 교육, 경진대회 등 가점 항목 추가 신설, 7점으로 배점 확대, 업체 직접 신청

[평가기준 공개범위 확대]

공개 범위	통합 전			통합 후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	법규준수도
① 최소기준	X	△	X	O
② 평가항목	△ (정정항목만 공개)	△	X	O
③ 평가산식	X	△	X	X (평가정의서는 제공)
④ 가중치	X	해당없음	해당없음	X
⑤ 배점	△ (배점한도 개괄적 공개)	△	X	△

[수출입 오류점수제도와 평가기준 일치화]

①정정 중요도 기준

통합 전	통합 후 (=오류점수 기준)
(수입) 중요 항목 12 개, 경미 항목 22 개 (수출) 중요 항목 8 개, 경미 항목 28 개 * 예) 수입 중요항목: 세종 등 12 개(BL 번호 X)	(수입) 중요 항목 29 개, 경미 항목 32 개 (수출) 중요 항목 19 개, 경미 항목 30 개 * 예) 수입 중요항목: BL 번호 등 29 개(세종 X)

②면제기준 일치화

통합 전	통합 후 (=오류점수 기준)
정정 등 시기에 따른 면제기준 없음	(정정) ~수리전/수출 7 일 이내 /자율정정 기간 내 정정시 면제 (취하) 수리전
정정의 사유에 따른 면제(수입 15 개, 수출 10 개)	정정의 사유에 따른 면제(수입 14 개, 수출 5 개)

(3) 이행일정

이행계획 수립(2025.05) → 시험운영 (2025.07~2025.11) → 제도시행 및 정식운영 (2025.12~)

II. 입안예고

3.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입안 이유

민원 신청 절차의 효율성과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별지 서식 제출 방식을 추가하고,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 신청 시 전자민원 시스템 입력 내용과 중복되는 지류 문서 제출의 불편을 개선하며, 추천신청 서류의 부수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출 방식 개선	별지 서식 방식 추가 - (현행) 신청서 2부(별지 제 1 호서식) - (개정) 신청서(별지 제 1 호서식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서류 부수 정비	추천신청 서류 부수 조정 - 사용계획서 1부 → 사용계획서 등

II. 입안예고

4.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입안 이유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 자료의 정책 활용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권자, 의약품 제조업자, 의약품등 수입자의 보고항목을 명확화·세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전산매체 외 방식 삭제 등 현행화	전산매체 등 실적 보고에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삭제하는 등 현행화 - (현행) 전산매체(CD 또는 디스켓 등을 말한다)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 - (개정) 정보통신망 등
의료용고압가스 제외 명시	관련 단체가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 보고해야할 대상인 완제의약품에 의료용고압가스가 제외되도록 명확화 - (현행) 완제의약품 - (개정) 완제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외)
생산 중량 규격 등 항목 추가	생산·수출·수입실적 제출 양식에 생산 중량 규격을 추가하는 등 보고항목 세분화 *별표, 별지 제 1 호서식 등

II. 입안예고

5.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입안 이유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11 조제 2 항에 따라 수입 허용 국가 및 목록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입 허용 국가/지역 및 종류 사항 반영	'[별표]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지역)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일부 개정 *식육 및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등 규정 별표 표 내 국가/지역, 세부 종류, 비교란을 추가 신설

Ⅲ.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GREEN MUNG BEAN)이 한·페루 FTA 상 원산지인지 여부

(1) 주요내용

- 가. 청구법인은 페루 소재 수출자로부터 GREEN MUNG BEAN(건조녹두)를 한-페루 FTA 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실시를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서면조사 결과, ‘농민의 재배사실 확인 자료 미제출’, ‘해당 농지에 녹두 재배 사실 없음’, ‘수집상의 거래내역 접근 거부’, ‘농업회사 생산비용 관련 거래자료 접근 거부’에 따른 원산지 확인 불가’를 이유로 ‘부적정’으로 청구법인에 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제출된 증빙자료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의제기를 불수용하고,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수출당국이 서면진술 등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하기로 관세당국 간 합의하였으므로 제공되는 검증지원 정보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바. 이후 페루 관세당국은 처분청에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쟁점물품은 한-페루 FTA 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회신 보고서를 제공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페루 관세당국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를 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재조사

페루 당국은 양 당국간 합의된 최종 기간을 넘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 상 원산지 물품’이라고 재회신한 바, 합의 기한을 지나 제출된 자료도 행정적 불복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어 페루 당국이 재회신한 원산지검증자료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3) 결정일

2025.05.16 (조심2024관0152)

Ⅲ. 조세심판사례

2.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1) 주요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9.4.19.부터 2022.6.8.까지 싱가포르 소재 수출자로부터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선적항분석서 상 순발열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우즈베키스탄 소재 해외구매자에게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D 명의로 CKD 부품을 수출하였는데, 쟁점수출자들은 각 수출신고서상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를 쟁점수출자들로 기재하고, ‘제조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하였으며, ‘환급신청인 구분’은 “2. 제조자”로 기재하였다.
- 나. 산세관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적정 여부에 대한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쟁점물품에 청구법인이 자체 분석한 하역항분석서 상 순발열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등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쟁점선적항분석서상 순발열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위 수정신고. 납부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기각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3) 결정일

2025.05.16 (조심2025관0001)

Ⅲ. 조세심판사례

3.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패널)을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 8418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 7007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1) 주요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9.4.24.부터 2023.12.29.까지 중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497 건으로 냉장고용 강화유리 패널[(Glass Door)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두께가 8 밀리미터(mm) 이하인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HSK 제 7007.19-1000 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5.6%)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4.1.1.부터 2024.4.22.까지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 8418.99-1000 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기각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평판형 강화유리형태로 수입되어 수입 후 커버, 완충재 등 가공공정을 거쳐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고, 달리 전도성 도료 인쇄 등 전기적 특성이 보이지 않으며 쟁점물품에 수행된 가공공정은 제 7007 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3) 결정일

2025.04.18 (조심2024관0125)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1. Chicken Powder 등 4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 개요

구분	내용
품명	① Broth preparation ; Knorr Chicken Powder ② Broth preparations; KNORR LIQD BOU CHICKEN (HCF) ③ Soup preparations of Vegetable ; KNORR MUSHROOM SAUCE MIX ④ Soup preparations; KNORR LOBSTER SAUCE
물품 설명	식염, 닭고기 추출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조미료
HS CODE	- 변경 전: 제 2104.10-1000 호(①~②), 제 2104.10-3000 호(③), 제 2104.10-9000 호(④) - 변경 후: 제 2103.90-9090 호(①~④)
변경 사유	풍미와 감칠맛을 더해주는 혼합조미료이므로 제 2103.90-9090 호에 분류 (2025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시행일

2025.05.26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2. Sputtering system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 개요

구분	내용
품명	Sputtering system; SDH-4550L; JAPAN
물품 설명	반도체 IC 에 전자파 차폐층을 증착하는 장비
HS CODE	- 변경 전: 제 8479.89-9050 호 - 변경 후: 제 8486.40-2099 호
변경 사유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기계이므로 제 8486.40-2099 호에 분류(2025 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시행일

2025.05.26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3. Golf equipment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 개요

구분	내용
품명	Golf equipment(golf simulator optional device) ; X-balance
물품 설명	로드셀을 이용한 골퍼의 이동경로 감지하는 기기
HS CODE	- 변경 전: 제 9506.39-9000 호 - 변경 후: 제 9031.80-9099 호
변경 사유	로드셀을 이용한 측정기기에 해당하므로 제 9031.80-9099 호에 분류(2025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시행일

2025.05.26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4. X-ray Generator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 개요

구분	내용
품명	X-ray Generator ; SITE-X C3005 300kvp
물품 설명	엑스선 발생기와 컨트롤러로 구성된 독립된 공업용 엑스선 기기
HS CODE	- 변경 전: 제 9022.90-1010 호 - 변경 후: 제 9022.19-2000 호
변경 사유	엑스선을 사용하는 공업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제 9022.19-2000 호에 분류(2025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시행일

2025.05.26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5. GARNISH ASSY-RR DR RR FRAME,LH ; 83270-A7000

(1) 개요

구분	내용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RNISH ASSY-RR DR RR FRAME,LH ; 83270-A7000 - GARNISH ASSY-FR DR FRAME,LH(82250-B1000(DH 차종)) - GARNISH ASSY-RR DR FRAME,LH(83250-B1000(DH 차종)) - GARNISH ASSY-C PILLAR-LH - GARNISH ASSY-A PILLAR-LH - GARNISHASSY-FR DR FRAME LH; 82250-2W000
물품 설명	자동차 차체를 형성하는 특정 형상의 물품
HS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전: 제 3926.30-0000 호 - 변경 후: 제 8708.29-0000 호
변경 사유	차체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제 8708.29-0000 호에 분류(2025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시행일

2025.05.26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6. MOTORCYCLE HANDLE COVER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 개요

구분	내용
품명	MOTORCYCLE HANDLE COVER
물품 설명	모터사이클 손잡이에 장착하는 커버
HS CODE	- 변경 전: 제 8714.10-9000 호 - 변경 후: 제 6307.90-9000 호
변경 사유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제 6307.90-9000 호에 분류(2025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시행일

2025.05.26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7. Thermal compound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 개요

구분	내용
품명	Thermal compound HITECO-100
물품 설명	산화아연을 실리콘 오일에 분산시킨 백색 페이스트상의 열전도 그리스
HS CODE	- 변경 전: 제 3403.99-9000 호 - 변경 후: 제 3824.99-9090 호
변경 사유	열전도 기능을 위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제 3824.99-9090 호에 분류(2025년 제 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시행일

2025.05.26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8. RUBBER PAD 등 4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 개요

구분	내용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article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EPDM SPONGE - Other article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RUBBER SEALING (W/STRIP); R.KOREA - RUBBER PAD, 54619-3X000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EPDM PAD TAPE; R.KOREA
물품 설명	가향한 셀룰러 연질 고무 스트립 일면에 양면테이프가 접착된 물품
HS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전: 제 4016.10-0000 호 - 변경 후: 제 4008.11-9000 호
변경 사유	가향한 셀룰러 연질 고무로 만든 판, 시트, 스트립에 해당하므로 제 4008.11-9000 호에 분류(2025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시행일

2025.05.26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9. Androi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 등 2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 개요

구분	내용
품명	- Androi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 ; CUS-C98RPU ; KOREA - LCD DISPLAY ; RP704K
물품 설명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전자칠판
HS CODE	- 변경 전: 제 8528.52-1000 호 - 변경 후: 제 8471.41-1000 호
변경 사유	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해당하므로 제 8471.41-1000 호에 분류(2025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시행일

2025.05.26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관세청,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 돕는다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2편 - 자동차부품」 배포
- 생소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대한 실무 활용 중심 안내로 기업 부담 완화

□ 관세청은 5월 16일(금)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 이는 지난 4월 30일(수)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HTS)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 * 추가 관세 대상 여부는 관세청이 4월 18일(금) 발표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 품목번호(THS)와 한국 품목번호(HSK) 연계표'를 통해 확인 가능

□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LED)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고광호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2. 관세청, 철강 수출 지원 위해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

- 5월 30일부터 철강제 관류(품목분류(HS) 제73류) 제품에 대한 선상수출신고 허용

□ 관세청은 국내생산 철강제 관류(품목분류(HS) 7304~7306호) 제품에 대해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수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선박에 적재할 수 있으나, 물품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먼저 선박에 적재한 후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3월 12일부터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철강 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되었다.

□ 앞으로는 철강제 관류 수출 시에도 수출신고 수리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게 되어,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 없이 선적 흐름이 원활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무게와 크기에 따라 적재 순서를 지켜야 하는 철강제 관류의 특성상 한 건의 지연이 전체 작업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은 연쇄적인 선적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관세청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선상수출신고 대상품목 확대>

현 행	개 선
1. 산물 및 광산물 2. 신선도 유지 필요 수산물 3. 자동차 운반선 적재 신차 4. 품목분류(HS) 제72류 철강류	1. 산물 및 광산물 2. 신선도 유지 필요 수산물 3. 자동차 운반선 적재 신차 4. 품목분류(HS) 제72류 철강류 (추가) 품목분류(HS) 제7304~7306호 해당 철강제품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3. 산업부, 미(美) 반도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

- 美 상무부의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적극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美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 5.6(화, 현지시간)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美 상무부는 지난 4.1(화)에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하였고, 4.16(수)부터 21일 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 Semiconductors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 등을 통해 美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하였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對美 협의를 지속 추진하여,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對美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4. 정부, 의약품 분야 미(美)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 의견서 제출

- 美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 대비 정부 의견 적극 피력 -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❷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함.

❸ 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극대화 기대

양국간 필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함.

※ 정부의견서 원문은 미국 상무부에서 공개하는 대로 배포 예정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 (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 (https://www.khidi.or.kr)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통상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을 운영(2.18~)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율 확인, 해외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의약품에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5. 제460차 무역위원회 열려

-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2.26~18.52% 덤프방지관세 부과 건의
- 「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5월 22일(목)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덤프조사 1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덤프조사를 개시한 3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번 심의·의결한 사건은 '24년 8월 조사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덤프조사로 무역위원회는 동 제품의 덤프사실과 덤프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해당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2.26~18.52%의 덤프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덤프조사 개시를 보고한 3건은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이다.

한편,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프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중 열간압연 후판 건은 '24.10월 덤프 조사를 개시하여 현재 27.91 ~ 38.02% (2025.4.24~8.23)의 잠정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판정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판정 예정이다.